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68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윤준병·김한규·민병덕

정성호 • 박희승 • 김민석

허성무 · 장철민 · 조계원

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불편을 이유로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다에 뛰어드는 등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어민들의 안전 증진을 도

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안 제24조).
- 나.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함(안 제58조).

법률 제 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을 "안전한"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자
-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 및 법률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 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 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 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제58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 해당하는-----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신 설> 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 명조끼 또는 구명의 또는 구 명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 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

<신 설>

- ④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자
- 6. 7. (생략)
- ⑥・⑦ (생 략)

게 하지 아니한 자

-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 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6. 7. (현행과 같음)
- ⑥·⑦ (현행과 같음)